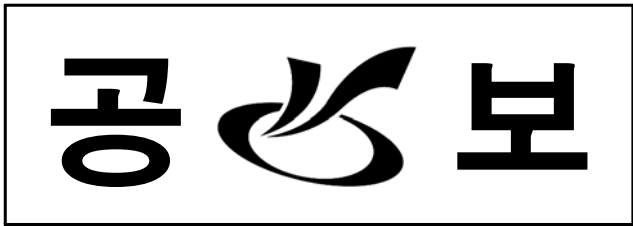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74호
2008년 12월 31일 수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4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8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 15

회							
람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6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4호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고시 18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5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등에관한
고시(안) 20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9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22
- 제2291부대 고시08-7호 2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9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8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06호 미술장식품설치 심의위원회 의결내용
공고 2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09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1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독가촌지구
소3-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32

조 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1,738,000원” 을 “월1,824,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3만원 지급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지급 신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① 수당은 분기마다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규	칙
---	---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추진 경과를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공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는 기획홍보실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등)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4.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5.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해야 한다.
-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
2.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
 - 가. 계획서 · 보고서 · 추진계획표 · 일정표 · 심사분석결과 등
 -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 다. 공청회 · 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 ② 담당부서에서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다음연도 1월까지 총괄부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2월에 구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표창 등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요정책 실명제 리스트

[illegible]

※ 사업유형 : ① 주요 규정현안 ② 대규모 공사·예산사업
③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④ 조례, 규칙 등 제정사항
⑤ 기타 보존할 필요 있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illegible]

※ 작성요령 : 등록번호(조직도의 실과순서-사업순서),
사업유형(별지 제1호서식 참조)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관리 표식

건설공사 및 구조물설치참여자			
구 분	성 명	구 분	성 명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자	
설 계 자			

※ 표시의 크기는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크기로 제작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추진배경	
추진경과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 타	
공개구분	
총소요기간 및 예산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35,000원”을 “4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으로 정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

(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계	단순노무원				의료급여 관 리 사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소계	시설 관리	현업 종사	지도 단속				
계	186	20	11	6	3	1	5	139	21
구분청소계	183	18	9	6	3	1	5	139	20
총 무 과	23	3	3						20
민원봉사과	2	2	2						
재난관리과	1	1	1						
주민생활지원과	1					1			
청소행정과	142	3		3				139	
환경보전과	1	1			1				
건 설 과	9	4	1	3			5		
도시개발과	1	1			1				
녹지경관과	2	2	1		1				
교통행정과	1	1	1						
의회사무국소계	1	1	1						
의회사무국	1	1	1						
보건소 소계	1								1
보건행정과	1								1
출장소 소계	1	1	1						
검단출장소	1	1	1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4호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고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민원사무명 및 수입증지요금

연번	민원사무명	요금(원)	연번	민원사무명	요금(원)
1	주민등록등·초본	각350	8	토지(임야)대장	500 (1장추가시100)
2	인감증명	600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흑백) 1,500(칼라)
3	가족관계증명서	1,000	10	지적(임야)도	700
4	기본증명서	1,000	11	공시지가확인원	800
5	혼인관계증명서	1,000	12	건축물대장	500(장당)
6	입양증명서	1,000	13	환지예정지증명원	400(롯데당)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000	14	경계점좌표등록부	500

2. 발행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3. 발행년월일 : 2008년 12월 29일

4.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처리되는 인증항목

가. 수입증지요금

나. 발행기관명

다. 발행년월일

라. 계기인영번호

2008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5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조 및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제3753호)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및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설치지역은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도로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 이상인 도로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용기충전업소가 위해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충전시설 설치기준)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되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4조(대지 및 시설)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거리 유지) 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

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 10조에서 규정한 【별표3】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항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제6조(위해방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허가신청이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 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단, 변경허가 대상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 지번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 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 시에는 고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3.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고시제2007-7호(2007. 01.30)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59호

2009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I.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재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0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8종, 1.2% 인상)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30종, 0.3% 인상)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종, 0.4%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2종, 0.4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7종, 10.7%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9종, 0.3%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1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종, 2.9%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1종)

①용어정의 ②대상2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 (1종)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 주요내용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2009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승인 신청(안)			비 고
	조정기준 (행정자치부)	승인신청 주요내용	기준대비 변동사항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당 510,000원	※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심의대상 아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사용)	-	-	
○ 구조지수 - 9단계(지수 : 20 ~ 120)	○ 구조지수 ⇒ 용어의 정의 및 조정(4종) - 철파이프조 : 용어의 정의 신설 - 라멘조 : 콘크리트조에 포함(삭제) - 철골콘크리트조 등 용어 정비 : 건물→구조, 판넬→패널 -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60→80(상향)	·조정기준과 동일	변동없음	
○ 용도지수 - 8단계(지수 : 30 ~ 135)	○ 용도지수 ⇒ 조정(3종) - 원자력발전시설 : 125→135(상향) - 전업어가 : 면지역→읍·면지역 - 교육연구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아동관련시설	·조정기준과 동일	"	
○ 위치지수 - 11단계(지수 : 80 ~ 130)	○ 위치지수 ⇒ (전년과 동일)	·조정기준과 동일	"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세부내역 생략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컨테이너 건물:경량철골조와 동일	·조정기준과 동일	"	
○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 6단계(5.1기준) - 특수설비 설치 건물 : 2단계 - 특수건물 : 1단계 - 2층이상 건물의 지상 상가부분 : 3단계 나. 감산대상 : 13단계 - 단독주택 : 2단계 · 주택차고 : 1단계 · 특수구조 건물 : 3단계 - 2층이상 건물의 지하 상가부분 : 7단계	○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 6단계 ⇒ (5.1일과 동일) ※ 2008.1.1 24단계 결정고시 후 5.1기준 행정안전부의 각 가산율 15% 감산 결정에 따라 6단계 조정된 내역임 나. 감산대상 : 13단계(동일) ⇒ (전년과 동일)	·조정기준과 동일	"	
○ 증·개축 건물 - 세부내역 생략	○ 증·개축 건물 - (전년과 동일)	·조정기준과 동일	"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물의 시가 반영 차등 감산특례 : 9단계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 반영 차등 감산특례 : 9단계 (전년과 동일)	·조정기준과 동일	"	
○ 건물시가표준액 자체조정범위 - 50%범위내 조정	○ 건물시가표준액 자체조정범위 - 30%범위내로 축소조정	·조정기준과 동일	"	
○ 시가표준액 일람표 - 세부내역 생략	○ 시가표준액 일람표(전년과 동일) - 세부내역 생략	·조정기준과 동일	"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내용

(단위 : 건)

구 분 종류별		기중				2009 조정방법			2009 조정내역				
		계	2008	신규	삭제	계	조사 시가	전년 지수	계	인상	인하	동결	신규
계	총계	42,812	30,831	12,110	129	42,812	24,164	18,648	42,812	1,962	1,209	27,531	12,110
차량	소계	29,198	18,688	10,531	21	29,198	11,948	17,250	29,198	1,037	380	17,250	10,531
	국산	23,669	15,853	7,816		23,669	8,687	14,982	23,669	569	302	14,982	7,816
	외산	5,529	2,835	2,715	21	5,529	3,261	2,268	5,529	468	78	2,268	2,715
기계 장비	소계	9,607	8,397	1,228	18	9,607	9,607		9,607	451	181	7,747	1,228
	국산	5,893	4,986	918	11	5,893	5,893		5,893	417	162	4,396	918
	외산	3,714	3,411	310	7	3,714	3,714		3,714	34	19	3,351	310
선박	소계	135	135			135	135		135	40		95	
항공기	소계	151	146	5		151	5	146	151	1		145	5
	고정익	90	86	4		90	4	86	90	1		85	4
	회전익	61	60	1		61	1	60	61			60	1
시설물	소계	1,187	1,191	30	34	1,187	1,187		1,187	238		919	30
	레저	229	254	5	30	229	229		229			224	5
	저장	78	78			78	78		78	74		4	
	도크 접안	23	23			23	23		23	11		12	
	도관	74	74			74	74		74	44		30	
	급배수	124	124			124	124		124	60		64	
	에너지	580	559	25	4	580	580		580	20		535	25
	기타	79	79			79	79		79	29		50	
부수 시설물	소계	383	381	2		383	172	211	383	68	26	287	2
입목	소계	23	36		13	23	23		23			23	
어업권	소계	198	186	12		198	73	125	198	22	10	154	12
회원권	소계	1,930	1671	302	43	1,930	1,014	916	1,930	105	612	911	302
	골프	750	683	77	10	750	474	276	750	18	376	279	77
	콘도	764	653	144	33	764	419	345	764	63	220	337	144
	체육	409	328	81		409	118	291	409	24	13	291	81
	승마	7	7			7	3	4	7		3	4	

제2291부대 고시08-7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제 2291 부 대 장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분	위치	면적(㎡)
제한보호구역	서구 12개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20,412,539

2. 지형도면등(붙임# 참조)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2291부대 고시 제 08 - 7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6

제 2291 부대장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구 분	위 치	면적(m ²)
제한보호구역	서구 12개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20,412,539

2. 지형도면등(붙임# 참조)

3. 관계도서

해당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세부도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19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1 규정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8년 7월1일기준
- 단위면적 : 원/㎡
- 이의신청 : 7필지
-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032)560-48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06호

미술장식품설치 심의위원회 의결내용 공고

미술장식품설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 심의일시 : 2008. 12. 23. (화) 14:00 ~ 17:00
- 심의장소 : 서구청 2층 대상항실
- 심의안건 : 인천신현 주공아파트(신현동 254 외 3필지)

미술장식품 심의

- 심의결과

(단위:㎡/천원)

건축주 성 명	건 축 개 요				미 술 품 개 요			심의 의결 사항	비고 (의견제시)
	위치	층수	건 축 연면적	용도	총설 치수	작 품 현 황			
						작품명	작품 가액		
인천신현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인천신현 주공아파트 신현동 254 외 3필지	지하2층 지상33층	565,393,811㎡	공동 주택	조각 1점	무빙- moving	95,762	승 인	
"	"	"	"	"	"	19032008	95,762	승 인 (조건부)	작품 높이를 3.5m 보다 낮게 설치
"	"	"	"	"	"	생성공간- 소나무	95,762	승 인 (조건부)	작품의 하단 부를 좀더 안정감 있게 설치
"	"	"	"	"	"	skin of time	95,762	승 인 (조건부)	작품의 내부 의 조명을 현재보다 밝 게 설치
"	"	"	"	"	"	어느 개인날	85,114	승 인	
"	"	"	"	"	"	공간놀이 08B01	85,114	승 인	
"	"	"	"	"	"	평화	85,114	승 인	

200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1209호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내역 : 정밀/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이환희(인천35라5105) 외 277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8. 12. 29 ~ 2009. 01. 12 (15일간)
4. 감경과태료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의견제출기한 : 2009.01.12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동법 제94조제2항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부과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2009.1.12)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된 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121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독가촌지구 소3-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독가촌지구 소로3류1호선, 사업명: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변경사유 : 법면 추가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10-1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1호선)
【명칭】 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
【당초】 $B = 6m$, $L = 220m$, $A = 1,320m^2$ 【변경】 $B = 6m$, $L = 220m$, $A = 2,701m^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07. 6월 ~ 2008. 12. 31 【변경】 2007. 6월 ~ 2009.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불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과 같음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용지조서 (1)

변경 전 : 검은색
변경 후 : 빨간색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관입면적(㎡)			잔여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용지도번호)	
					도로내	도로외	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관계		관리내용
1	백석동	산10-12	임	4,377.00	58.12	0.00	58.12	4,318.88		조세형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 19-1		인천광역시 서구	국	공유자	지분 6660분의 3519	1
1	백석동	산10-17	임	59.00	59.00	0.00	59.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
2	백석동	산10-21	임	4.00		4.00	4.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2
3	백석동	산10-22	임	2.00		2.00	2.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3
2	백석동	산10-13	임	9,219.00	326.67		326.67	8,892.33		조세형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 19-1		인천광역시 서구	국	공유자	지분 6660분의 3519	2
4	백석동	산10-26	임	128.00	0.00	128.00	128.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4
5	백석동	산10-23	임	157.00		157.00	157.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5
6	백석동	산10-19	임	428.00	428.00	0.00	428.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6
3	백석동	산10-4	임	595.00	31.47		31.47	563.53		류유규	인천광역시 서구 시원동 104-1						3
8	백석동	산10-20	임	18.00		18.00	18.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8
9	백석동	산10-25	임	12.00	12.00		12.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9
10	백석동	산10-24	임	1.00		1.00	1.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0
11	백석동	산10-16	임	48.00	48.00	0.00	48.00	0.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1

용지 조서 (2)

법정권 : 경인권
법정호 : 용간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용도지역 도농지구	성명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고 (용지도번호)
					도로내	도로외								
4	백석동	38-6	전	636.00	335.69			성주이씨용중	인천 북구 가좌동 206					4
7	백석동	38-22	전	26.00		26.00		성주이씨용중	인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305					7
12	백석동	38-15	전	384.00	384.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2
13	백석동	38-19	전	287.00		287.00		성주이씨용중	인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305					13
5	백석동	산10-3	전	1,587.00	215.11			국	산업청					5
14	백석동	산10-14	임	303.00	303.00			국	산업청					14
6	백석동	38-5	전	24,462.00	20.39			성주이씨용중	인천 북구 가좌동 206					6
15	백석동	38-13	전	22.00	22.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5
16	백석동	38-18	전	8.00		8.00		성주이씨용중	인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305					16
7	백석동	38-4	전	2,430.00	222.22			민대기	인천광역시 서구 서천동 산6					7
17	백석동	38-12	전	222.00	222.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17
18	백석동	38-21	전	35.00		35.00		민대기	인천 서구 시현동 산6					18
19	백석동	38-17	전	20.00		20.00		민대기	인천 서구 시현동 산6					19
8	백석동	38-3	전	2,142.00	196.96			성주이씨용중	인천 북구 가좌동 206					8
20	백석동	38-16	전	12.00		12.00		성주이씨용중	인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305					20
21	백석동	38-10	전	524.00	524.00			국	인천광역시 서구					21
22	백석동	38-20	전	21.00	0.00	21.00		성주이씨용중	인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305					22
계				45,448.00	1,403.85									
계				2,701.00	1,982.00	719.00		-						

